## 일반행정/제 4 장 사무처리

## 후생복지시설대여 규정

(규정명 변경, 전문개정 2003.12.1.) (최종개정 2023.5.1.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함) 후생복지시설[생활관, 복지매장(식당, 매점, 서점, 자동판매기 등), 주차장]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변경 2021.2.1.)
- 제2조(대여시설) 대여시설은 우리 대학교 구성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유·무상 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운영자 자격) 대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(이하 "운영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사상이 건전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
  - 2.시설물 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- 3.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
- 제4조(운영자 자격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자가 될 수 없다.
  - 1.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
  - 2.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 가족
  - 3.우리 대학교의 재적생
  - 4.제3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타 시설물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자
- 제5조(운영자 선정) 운영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」에 따라 입찰과정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 (변경 2021.2.1.)
  - ②(삭제 2021.2.1.)
- 제5조2(후생복지시설총괄위원회)(신설 2021.2.1., 조명 변경 2023.5.1.) ①우리 대학의 후생복지시설을 총괄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총괄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(변경 2023.5.1.)
  - ②후생복지시설총괄위원회는 부총장, 기획조정실장, 학생처장, 사무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변경 2022.3.1., 2023.5.1.)

- ③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
- ④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⑤후생복지시설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(변경 2023.5.1.) 가.후생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(변경 2023.5.1.)
- 나.후생복지시설 계약에 관한 사항(변경 2023.5.1.)
- ⑥회의는 학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(신설 2023.5.1.)
- 제5조3(분과위원회)(신설 2023.5.1.)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  - 1.복지시설운영분과위원회 :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2.주차·편의시설운영분과위원회 : 사무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    - 1.복지시설운영분과위원회
      - 가.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    - 나.복지시설 운영자 관리에 관한 사항
    - 다.복지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
    - 라.복지시설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시행에 관한 사항
  - 2. 주차 · 편의시설운영분과위원회
    - 가.주차·MCC(식당,편의점,커피숍 제외)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
    - 나.주차·MCC(식당.편의점.커피숍 제외)시설 운영자 관리에 관한 사항
    - 다.주차·MCC(식당,편의점,커피숍 제외)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
    - 라.주차·MCC(식당,편의점,커피숍 제외)시설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시행에 관한 사항
  - ③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- **제6조(계약체결)** 시설을 대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와 운영자간에 다음 사항이 명시된 복지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1.대여기간
  - 2.대여목적(운영자가 할 사업의 종류)
  - 3.기부금
  - 4.운영자가 우리 대학교에 예치할 보증금
  - 5.운영자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며, 우리 대학교의 시설 운영 방침에 따를 것이라는 취지의 서약서
- 제7조(대여기간) 대여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운영자의 의무)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운영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자기 비용으로 우리 대학교를 수익자(보험금 수령인)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2.운영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수령할 제반 요금은 사전에 우리 대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.운영자는 우리 대학교의 허가없이 대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
- 4.운영자는 총장의 승인없이 학교의 시설물, 비품 등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. (변경 2021.2.1.)
- 5.운영자는 시설, 비품 및 기타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6.운영자는 대여시설 내에서 침식을 하지 못한다.
- 7.운영자는 대여시설 사용에 대한 공과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8.운영자 및 그 종사원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.
- 9.운영자는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자기 비용으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10.운영자는 우리 대학교 담당직원의 수시점검에 응해야 하며, 시설의 보수, 관리방법 변경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11.운영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, 우리 대학교의 승인 없이 휴업할 수 없다.
- 12.운영자는 위원회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 해결 요구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 야 한다. (신설 2021.2.1.)
- 제9조(해약 조치) 우리 대학교는 운영자가 사용기한 만료 전 일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다.
  - 1.제8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우리 대학교의 방침 변경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3.기타 운영자의 시설이용이 학교 방침에 위배되거나 시설이용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0조(관장) ①후생복지시설총괄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에서 관장한다.(변경 2005.2.1, 2006.1.5., 2008.3.1., 2021.2.1., 2023.5.1.)
  - ②복지시설운영분과위원회는 학생처 자연캠퍼스 학생지원팀과 인문캠퍼스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한다.(신설 2023.5.1.)
  - ③주차·편의시설운영분과위원회는 사무지원처 총무인사팀과 총무시설팀에서 관장한다.(신설 2023.5.1.)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

부 최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